

의안번호	2218972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6. 7. 6.
추계번호	26F26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 추계) 개정안에 따라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일부 규정은 2029년 12월 31일)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6년 4,749억원, 2036년 10억원 등 2027년에서 2036년까지 10년간 총 3조 2,165억원(연평균 3,21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임대 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3년간 -428억원(연평균 -143억원)
 -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5년간 -20억원(연평균 4억원)
 -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3년간 -2조 9,220억원(연평균 -5,844억원)
 -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0년간 -1,588억원(연평균 -159억원)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5년간 -916억원(연평균 -183억원)
 -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33조의3 제4항)은 2026년 시행으로 현재 지방세 감면실적을 확인할 수 없어 향후 지방세 감면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수 없음
 - 해당 규정에 따라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동 비용추계는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79조의2)은 2024년 시행 이후 지방세 감면실적이 발생하지 않아 향후 감면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세수효과를 추계할 수 없음
 - 해당 규정에 따라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동 비용추계는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지방세,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6	누적	연평균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33조의3제1항)	-101	-138	-190				-428	-143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33조의3제4항)	미첨부 3호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64조제4항)	-4	-4	-4	-4	-4		-20	-4
교환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66조)	-4,202	-4,898	-5,709	-6,654	-7,756		-29,220	-5,84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79조의2)	미첨부 3호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80조의2)	-266	-276	-286	-297	-307	-155	-1,588	-159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87조)	-177	-180	-183	-186	-190		-916	-183
소 계	-4,749	-5,496	-6,372	-7,138	-8,254	-155	-32,165	-3,216

주: 안 제33조의3제4항과 안 제79조의2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어 일부 추계함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3조의3 제1항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	○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9.12.31.	
2	안 제33조의3 제4항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	○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3	안 제64조 제4항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 선박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4	안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5	안 제79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감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과밀억제 권역 외 지역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6	안 제80조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본점 또는 주사무소·공장시설 이전, 공장 신설·증설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7	안 제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33조의3 제1항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	○	
2	안 제33조의3 제4항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64조 제4항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4	안 제66조 제4항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5	안 제79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감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6	안 제80조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	
7	안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7년 시행되어 감면의 세수효과가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안 제33조의3 제1항) 수도권 외 지방소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원시취득세 감면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21~2025년)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 (임대아파트 비중) 국토교통부의 2024년 기준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자가/임차/무상) 중 ‘임차’가 차지하는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

- (취득세) 한국부동산원의 「2025 건물신축단가표」를 바탕으로 아파트 면적(m²)당 건물표준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산정,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하여 취득세 추정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주택가액은 취득세 감면기준액인 3억원 이하인 것으로 가정하여 취득세 감면액 추계
- (안 제64조제4항)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의 선박(이하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 추계
 - 2024년 친환경선박 취득세 감면 1건당 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2024년 친환경선박 취득세 감면 1건당 평균 감면액: 1.0억원
 - 향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선박의 수는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1~'30년)」에 따라 실시 중인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사업의 최근 5개년('21~'25년) 연평균 실적에 따른다고 가정
 -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사업의 최근 5개년 연평균 실적: 4건
- (안 제66조 제4항)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통계」 전기자동차 신규등록 건수를 참고하여, 향후 전기자동차 취득대수를 전망하고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다음 가정에 따라 향후 전기자동차 취득대수를 전망
 - (전기자동차) 2025년 신규등록 건수(22.1만대)를 기준으로, '23~'25년 연평균 증가율(16.6%)에 따라 향후 신규 취득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
 - 일반적인 자동차 가격수준을 고려할 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감면액은 한도(140만원)를 적용받을 것을 전제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전기자동차 감면액 한도(140만원)를 역산할 경우, 차량가액은 2,000만원 수준(취득세율 7% 적용 시)
 - * 자동차 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경자동차 4%), 그 밖의 자동차 2~5%
- (안 제80조의2)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 추계

- (취득세) 본 감면제도는 2024년 시행되어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4년 17.1 억원, 2025년 265.7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5년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2025년 취득세 감면액: 265.7억원
- (재산세) 본 감면제도는 2024년 시행으로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5년 1.1 억원으로 향후 재산세 감면액 추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산세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을 비교하여 향후 재산세액을 추계
 -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4년 감면실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5년은 1.1억원으로 2025년에 취득 및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토지 및 건축물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을 비교하여 향후 취득세 감면실적 대비 재산세 감면실적을 추정
 - * (가정 1)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50씩으로 취득하였다고 가정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추계 시 취득세는 4, 재산세는 0.156으로 취득세 대비 재산세 비율은 3.9% 수준으로 추정되며, 취득세 감면액 대비 재산세 감면액 비율도 동일한 수준으로 추정
 - * (가정 2)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계속 보유하여 향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
 - * (가정 3)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비수도권 기준으로 추계하여, 제1항 및 제2항은 감면을 5년간 100%, 제3항은 5년간 75%를 적용

□ (안 제87조)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

- (취득세)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
 -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은 2020, 2022, 2024년은 110억원 대였으며 2022년과 2024년은 140억원대로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 (재산세)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은 최근 5년(2020~2024년)의 연평균 증가율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
 - 감면조항별 2020~2024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액 증가율은 신용협동조합(안 제 87조제1항) 4.8%, 새마을금고(안 제87조제2항) 6.3%임

3. 상세 추계내역

가.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33조의3 제1항)

(1) 제도 개요 및 추계방법

□ (제도개요) 수도권 외 지방소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취득세 감면하는 제도로 2024년 12월 31일 신설

- 감면율: 취득세 25%
- 감면대상: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9.12.31.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취득세 감면) 국토교통부 및 한국 부동산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임대 물량 및 과세표준을 전망하여 세수효과 추계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임대 아파트 수)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의 연도별·면적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실적을 바탕으로 「주거실태조사」상 2024년 기준 지방 평균 임차 비중을 반영하여 전망

[표 2]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실적: 2021~2025년

(단위: 호, %)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2021	60㎡ 이하	2,736	401	2,335
	60~85㎡	4,451	151	4,300
	85㎡ 초과	262	49	213
2022	60㎡ 이하	3,123	648	2,475
	60~85㎡	4,060	537	3,523
	85㎡ 초과	335	107	228
2023	60㎡ 이하	4,139	1,174	2,965
	60~85㎡	5,955	806	5,149
	85㎡ 초과	763	187	576
2024	60㎡ 이하	5,623	1,885	3,738
	60~85㎡	13,753	2,088	11,665
	85㎡ 초과	2,104	278	1,826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2025	60㎡ 이하	5,767	1,564	4,203
	60~85㎡	18,756	2,310	16,446
	85㎡ 초과	4,118	369	3,749
`21~`25 연평균 증가율	60㎡ 이하	20.5	40.5	15.8
	60~85㎡	43.3	97.8	39.8
	85㎡ 초과	99.1	65.7	104.8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향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는 최근 5년(2021~2025년)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 * 85㎡ 초과 미분양 아파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표 3] 면적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 전망: 2027~2029년

(단위: 호)

		2027	2028	2029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수 ¹⁾	60㎡ 이하	5,639	6,532	7,565
	60~85㎡	32,163	44,978	62,900

주: 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수를 의미

2) 본 취득세 감면대상은 85㎡ 이하의 미분양 아파트이므로 85㎡ 초과는 제외

- 향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임대 물량은 2027~2029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전망치를 바탕으로 「주거실태조사」상 2024년 기준 지방 평균 임차 가구 비중을 반영하여 전망

[표 4] 면적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임대 물량 전망: 2027~2029년

(단위: 호, %)

		임차가구 비중 ¹⁾	2027	2028	2029
미분양 아파트 수 ²⁾	60㎡ 이하	28.9%	1,630	1,888	2,186
	60~85㎡		9,295	12,999	18,178

주: 1) 「주거실태조사」상 2024년 기준 지방 평균 전체 가구 중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중을 의미

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수를 의미

- (과세표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면적(60㎡/85㎡/102㎡)을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2025 건물신축단가표」의 유형별 면적(㎡)당 건물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주택별 평균 과세표준 및 전체 과세표준 전망
- － 다만, 건물표준단가는 용도 및 구조, 급수에 따라 다르므로 용도별·구조별·급수별 면적(㎡)당 건물표준단가를 평균하여 적용

[표 5] 유형별 면적(㎡)당 건물표준단가: 2025년 7월 기준

(단위: 원)

용도	구조	급수 ¹⁾	면적(㎡)당 표준단가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6~15층)	2급	1,774,000
		3급	1,659,000
		4급	1,388,00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16~29층)	2급	1,785,000
		3급	1,668,000
		4급	1,435,000
	평균		1,618,167

자료: 한국부동산원, 「2025 건물신축단가표」, 2025.11.

[표 6] 과세표준 추정: 2027~2029년

(단위: ㎡, 원, 만원, 억원)

	주택 면적 (㎡)	용도별 면적당 표준단가(원) (A)	주택별 과세표준 (만원) (B=A×면적)	전체 과세표준(억원)		
				2027	2028	2029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60	1,618,167	9,709	1,582	1,833	2,123
	85		13,754	12,785	17,879	25,003

- (취득세액 및 감면액 추정) 추정한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원시취득세율(2.8%) 및 감면율(25%)을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감면액 추정
- －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2027년 101억원, 2029년 190억원으로 추정

[표 7] 취득세액 및 감면액 추정: 2027~2029년

(단위: 억원)

	주택 면적(m ²)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취득세액 (원시취득세율 2.8% 적용)	60	44	51	59	155	52
	85	358	501	700	1,559	520
계		402	552	760	1,714	571
감면액 (감면율 25% 적용)	60	11	13	15	39	13
	85	90	125	175	390	130
계		101	138	190	428	143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임대 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7년 101억원, 2028년 138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428억원(연평균 14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 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33조의3제1항)	-101	-138	-190	-428	-143

나.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33조의3 제4항)

□ (제도개요)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를 최초로 유상취득 시 취득세 25%를 감면하는 제도로 2025년 12월 31일 신설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현황보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5월 현재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24,522호이며 이 중 85㎡ 이하는 20,030호임

[표 9]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현황: 2023~2026.5

(단위: 호, %)

면적	2023	2024	2025	2026.5
전체	8,690	17,229	24,398	24,522
60㎡ 이하	2,965	3,738	4,203	3,997
60~85㎡	5,149	11,665	16,446	16,033
85㎡ 초과	576	1,826	3,749	4,492

주: 수도권외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현황보고」

- 현재 주택의 유상취득 시 취득세율은 주택 취득자의 보유 주택수에 따라 최소 1%에서 최대 12%까지 구분되어 적용
 - 비수도권에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또는 2주택자는 주택 실거래가액에 1~3%의 세율 적용
 - 1세대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자 또는 법인은 12%의 취득세율 적용

[표 10]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율

구분		적용세율	
개인 (1세대)	1주택	6억원 이하	1.0%
	2주택	6억원 ~ 9억원	1.0~3.0% *
		9억원 초과	3.0%
	3주택	8%	
	4주택 이상	12%	
법인		12%	

주: 주택 수는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 기준

* 취득가액 6~9억원 구간은 매 150만원 단위로 취득세율 0.01%p씩 증가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감면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감면대상이 되는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수·취득가액 및 주택 취득 시 적용 취득세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해당 규정에 따라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동 비용 추계는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다.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64조 제4항)

(1) 제도 개요 및 추계방법

- (제도개요) 친환경선박의 보급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적용기한: (현행) 2026년 12월 31일→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
- (추계방법)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
 - 2024년 친환경선박 취득세 감면 1건당 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 친환경선박 취득세 감면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 있어 2024년 1개년도 실적이 전부임
 - － 2024년 친환경선박 취득세 총 감면 실적: 3.98억원(4건)
 - － 2024년 친환경선박 취득세 감면 1건당 평균 감면액: 1.0억원

[표 2] 2024년 친환경선박 취득세 감면실적

(단위: 억원, 건)

	세액	건수
2024년	3.98	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 향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선박의 수는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1~’30년)」에 따라 실시 중인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사업의 최근 5개년(’21~’25년) 연평균 실적에 따른다고 가정
 -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사업은 국가인증 신기술을 적용하여 친환경 내항선박을 건조하려는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선박 건조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사업
 -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사업의 최근 5개년 연평균 실적: 4건

[표 3]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사업 계획 및 실적

(단위: 척)

지원년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계획	3	5	7	7	8	8	7	7	6	-	58
실적	3	5	6	6	2	-	-	-	-	-	-

자료: 해양수산부 설명자료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7년 4억원, 2031년 4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20억원(연평균 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친환경선박 인증 등급 3등급 이상 선박에 대한 취득세 면제 (안 제64조제4항)	-4	-4	-4	-4	-4	-20	-4

라. 교환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66조)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 개요)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최대 140만원 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한도 및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이 변화
 - ('12~16년) 전기자동차 140만원 → ('17~18년) 전기 또는 수소자동차 200만원 → ('19~24년) 전기 또는 수소자동차 140만원 → ('25년 이후) 전기자동차 140만원
 - * 2024년 12월 31일 개정에 따라 수소자동차는 동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9.12.31.
- (감면실적)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21년 1,512억원에서 2022년 2,502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 2,407억원으로 소폭 감소
 - 2024년 12월 31일 동법 개정에 따라 수소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은 제5항으로 이동하였으므로 2024년까지의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수소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실적을 포함하고 있음

[표 14]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2021~2024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감면실적	1,512	2,502	2,483	2,407

주: 2024년까지의 제66조 제4항의 취득세 감면실적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감면실적의 합계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2) 추계방법

- (전기자동차 취득대수 전망)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통계」의 전기자동차 신규등록 건수를 바탕으로 2029년까지의 신규취득 대수 및 감면 대상 수를 전망

- 전기자동차는 2025년 신규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2023~2025년) 연평균 증감률(16.6%)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15] 전기자동차 신규등록 건수: 2023~2025년

(단위: 대)

	2023	2024	2025	최근 3년('23~'25년) 연평균 증감율
전기자동차	162,605	146,902	220,919	16.6%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통계」

[표 16] 전기자동차 신규취득 대수 전망: 2026~2031년

(단위: 대)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전기자동차	257,503	300,146	349,850	407,785	475,314	554,0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수효과) 전기자동차 신규취득 전망치에 감면액 한도를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

- 전기자동차의 일반적인 가격을 고려 시, 취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에 대해 한도액까지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
 - 전기자동차 감면액 한도(140만원)를 역산할 경우, 차량가액은 2,000만원 수준

[표 17]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 2027~2031년

(단위: 대,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전기자동차	감면대상(A)	300,146	349,850	407,785	475,314	554,027
	감면액(A×140만원)	4,202	4,898	5,709	6,654	7,75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결과

-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7년 4,202억원, 2031년 7,756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2조 9,220억원(연평균 5,8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66조 제4항)	-4,202	-4,898	-5,709	-6,654	-7,756	-29,220	-5,844

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79조의2)

- (제도개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2023년 12월 29일 신설
 - 감면내용: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75%
 - 감면대상: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할 것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추계결과)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함

- 동 감면규정은 2024년부터 시행되어 2025년(잠정치)까지 동 규정에 따른 감면실적이 발생하지 않음
- 또한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부동산 취득은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현재로서는 해당 기업의 부동산 취득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참고로, 최근 6년(2020~2025년)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을 살펴보면 총 121개의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용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세 감면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려움

[표 1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실적 : 2019~2023년

(단위: 개)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7	25	23	22	20	1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바.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80조의2)

(1) 제도 개요

- 동 제도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기회발전특구로 본사 등 이전,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본 감면제도는 2023.12.29. 신설되어 2024년 시행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및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80조의2 제1항)
 - 감면내용
 - 취득세: 50% (조례로 수도권 25%, 비수도권 50% 범위에서 추가 경감 가능)
 - 재산세: 수도권은 3년간 100%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비수도권 5년간 100%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비수도권은 조례로 그 다음 5년간 50% 범위에서 추가 경감 가능)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수도권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공장시설을 갖춘 기업이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안 제80조의2 제2항)
 - 감면내용
 - 취득세: 50% (조례로 50% 범위에서 추가 경감 가능)
 - 재산세: 5년간 100% 면제(조례로 그 다음 5년간 50% 범위에서 추가 경감 가능)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안 제80조의2 제3항)
 - 감면내용
 - 취득세: 50% (조례로 25% 범위에서 추가 경감 가능)
 - 재산세: 수도권은 5년간 35% 감면, 비수도권 5년간 75%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표 20]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 내용

항	대상	취득세		재산세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제1항	창업기업	50% (+25%)	50% (+50%)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5년간 100% (+다음 5년간 50%)
제2항	본사·공장 이전기업	*접경지역 50% (+50%)	50% (+50%)	*접경지역 5년간 100% (+다음 5년간 50%)	5년간 100% (+다음 5년간 50%)
제3항	공장 신설·증설	50% (+25%)	50% (+25%)	5년간 35%	5년간 75%

주: 1) ()는 조례로 정하는 추가 경감율임

2) 2026년 현재 비수도권 전 지역 및 경기도는 조례로 추가 경감

-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임
-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임
 - 2026년 6월 현재 총 64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고시됨

[표 21]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

No	시·도	시·군·구	부지명	지정고시일	지정면적(㎡)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 도시첨단산업단지	'24.11.6.	22,008
		원주시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391,241
		강릉시	강릉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612,128
		동해시	동해 북평국가산업단지		147,324
		삼척시	삼척 수소특화 일반산업단지		96,706
		영월군	영월 녹전리 핵심소재산업단지		153,750
		합계			
2	경상남도	고성군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24.6.25.	1,574,366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24.12.27.	591,145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25.7.30.	727,743
		하동군	대송산업단지		867,552
		창녕군	대합 일반산업단지		118,039
		창녕군	영남 일반산업단지		499,477
		합계			
3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 국가산업단지 1~5단지	'24.6.25.	2,133,675
		안동시	경북바이오 2차일반산업단지		229,615
		포항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1,185,732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1,373,746
		상주시	청리 일반산업단지		373,848
		합계			
4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국가산업단지	'24.11.6.	685,797
		북구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523,560
		광산구			
		합계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알파시티	'24.6.25.	253,647
		달성군	대구 국가산업단지		2,145,858
		북구	금호위터폴리스		334,089
		합계			

No	시·도	시·군·구	부지명	지정고시일	지정면적(m²)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	'24.6.25.	404,334
		합계			404,334
7	부산광역시	남구, 동구	문현금융단지	'24.6.25.	27,266
			북항재개발지역 2단계		723,710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	'24.12.27.	528,021
			동부산 E-PARK 일반산업단지		1,030,665
		강서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26.2.5.	338,414
			부산 에코델타시티 1단계		1,226,567
		합계			3,874,643
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집현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세종테크밸리)	'24.11.6.	822,496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897,606
		세종시	(전동면) 전동일반산업단지		140,258
		합계			1,860,360
9	울산광역시	북구, 남구, 동구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24.11.6.	1,832,875
		울주군	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1,288,939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1,517,764
		남구, 울주군	울산신항, 배후단지	'26.2.5.	361,303
		동구, 북구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404,736
		북구	이화 일반산업단지		336,297
		합계			5,741,914
10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국가산업단지 동호안	'24.6.25.	125,220
			세풍일반산업단지		858,180
			울촌 제1일반산업단지		556,987
		목포시, 해남군	목포신항 배후단지		416,031
		여수시	화원조선산업단지		200,000
			묘도항만 재개발 사업지		1,187,322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		103,629
		합계			3,447,369
1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3-1,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등	'24.6.25.	986,847
		익산시, 정읍시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272,815
			국가식품클러스터		228,282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217,345
		김제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882,272
			백구일반산업단지		336,322
		남원시	남원 일반산업단지	'25.7.30.	511,706
합계			3,435,589		

No	시·도	시·군·구	부지명	지정고시일	지정면적(㎡)
1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	'24.6.25.	302,901
		합계			302,901
13	충청남도	보령시	냉열특화산업단지	'24.11.6.	657,746
		서산시	대산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777,050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645,080
		부여군	부여일반산업단지		463,134
			은산2농공단지		62,055
		예산군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 일반산업단지		1,337,533
		합계			3,942,598
14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제2일반산업단지	'24.11.6.	82,170
			제천제4일반산업단지		817,864
		보은군	보은제3일반산업단지		849,329
		진천군	진천 메가폴리스 일반산업단지		1,460,004
		음성군	상우일반산업단지		415,619
		합계			3,624,986

자료: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10호,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

(2) 감면실적 및 추계방법

□ (감면실적) 현재 기회발전특구 제도 도입 초기로 2024년 감면액은 17.1억원이며, 2025년 감면액(잠정치)은 266.8억원으로 증가

- 전체 64개 기회발전특구 중 2024년에 지정된 특구는 56개, 2025년 지정 특구는 5개, 2026년 지정된 특구는 3개임
 - 이에 2024년의 경우 제도 도입 첫 해로 취득세 감면실적이 거의 없으나 2025년의 경우 취득세 감면실적이 크게 증가
- 2024년 취득세 감면실적은 17.1억원, 재산세 감면실적은 없음
- 2025년 취득세 감면실적은 265.7억원, 재산세 감면실적은 1.1억원임

[표 22]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공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2024~2025년

(단위: 억원)

구분	세목	2024	2025	누적	연평균
제80조의2 제1항	취득세	—	0.15	0.15	0.08
	재산세	—	0.0001	0.0001	0.00006
제80조의2 제2항	취득세	—	24.6	24.6	12.3
	재산세	—	0.8	0.8	0.4
제80조의2 제3항	취득세	17.1	240.9	258.0	129.0
	재산세	—	0.2	0.2	0.1
합계	취득세	17.1	265.7	282.8	141.4
	재산세	—	1.1	1.1	0.5
계		17.1	266.8	283.8	141.9

주: 2025년 감면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로 잠정치이며 감면실적은 조례에 따른 감면실적을 포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 (추계방법)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

- (취득세) 본 감면제도는 2024년 시행되어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4년 17.1 억원, 2025년 265.7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5년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2025년 취득세 감면액: 265.7억원
- (재산세) 본 감면제도는 2024년 시행으로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5년 1.1 억원에 불과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산세 감면액 추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산세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을 비교하여 향후 재산세액을 추계
 - 2024년 재산세 감면실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5년은 1.1억원으로 2025년에 취득 및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토지 및 건축물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을 비교하여 향후 취득세 감면실적 대비 재산세 감면실적을 추정
 - * (가정 1)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50씩 취득하였다고 가정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추계 시 취득세는 4, 재산세는 0.156으로 취득세 대비 재산세 비중이 3.9% 수준으로 추정되며, 취득세 감면액 대비 재산세 감면액 비율도 동일한 수준으로 추정

* (가정 2)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계속 보유하여 향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

* (가정 3)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비수도권 기준으로 추계하여, 제1항 및 제2항은 감면율 5년간 100%, 제3항은 5년간 75%를 적용

[표 5]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 및 재산세 추계 가정식

[취득세] (A)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예시) 토지 50, 건축물 50 취득 시 세액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가액	4%	(토지) $50 \times 4\% = 2$ (건축물) $50 \times 4\% = 2$	= 4 (A)
[재산세] (B)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예시) 토지 50, 건축물 50 보유 시 세액	
토지	시가표준액 (시가의 65.5%) $\times 70\%$	0.2 ~0.4%	50 $\times$ 65.5% $\times$ 70% $\times$ 0.3%* 시장 현실 공정시장 가격 화율 가액비율 세율 (평균세율)	=0.069
건축물	시가표준액 $\times 70\%$	0.25%	50 $\times$ 70% $\times$ 0.25% 시장가격 공정시장 가액비율 세율	=0.088
합계				=0.156 (B)
취득세 대비 재산세 비율 (=B/A*100)				3.9%

주: *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합산토지의 평균세율인 0.3%를 적용(별도합산토지의 실효세율도 비슷한 수준)

[표 24] 기회발전특구 내 취득세 발생에 따른 재산세 감면 발생액 추정(제1항 및 제2항)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27년 취득	3.9%	3.9%	3.9%	3.9%	3.9%				
2028년 취득		3.9%	3.9%	3.9%	3.9%	3.9%			
2029년 취득			3.9%	3.9%	3.9%	3.9%	3.9%		
2030년 취득				3.9%	3.9%	3.9%	3.9%	3.9%	
2031년 취득					3.9%	3.9%	3.9%	3.9%	3.9%
계	3.9%	7.8%	11.7%	15.6%	19.5%	15.6%	11.7%	7.8%	3.9%

주: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는 100% 감면, 3항은 5년간 75% 감면

2) 재산세 납부의무는 부동산 취득 다음연도(T+1)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취득세는 2027~2031년 총 1,329억원, 재산세는 2028~2036년 총 259억원으로 2027~2036년까지 10년간 총 1,588억원(연평균 15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80조의2 제1항): 10년간 -0.9억원(연평균 -0.09억원)
 - 수도권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공장시설을 갖춘 기업이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80조의2 제2항): 10년간 -147억원(연평균 -15억원)
 -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80조의2 제3항): 10년간 -1,440억원(연평균 -144억원)

[표 2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지방세, 2027~2036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6	누적	연평균
안 제80조의2 소계	-266	-276	-286	-297	-307	-155	-1,588	-159
－ 취득세	-266	-266	-266	-266	-266	－	-1,329	-133
－ 재산세	－	-10	-21	-31	-41	-155	-259	-26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제1항)	-0.15	-0.16	-0.16	-0.17	-0.18	-0.09	-0.9	-0.09
－ 취득세	-0.15	-0.15	-0.15	-0.15	-0.15	－	-0.76	-0.08
－ 재산세	－	-0.01	-0.01	-0.02	-0.02	-0.09	-0.15	-0.01
본사·공장 이전 (제2항)	-25	-26	-27	-28	-28	-14	-147	-15
－ 취득세	-25	-25	-25	-25	-25	－	-123	-12
－ 재산세	－	-1	-2	-3	-4	-14	-24	-2
공장 신설·증설 (제3항)	-241	-250	-260	-269	-279	-141	-1,440	-144
－ 취득세	-241	-241	-241	-241	-241	－	-1,205	-120
－ 재산세	－	-9	-19	-28	-38	-141	-235	-23

주: 재산세 감면은 재산세 납부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하므로 2036년까지 지방세 수입 변화

사.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87조)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이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외)이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안 제87조제1항)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외)이 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안 제87조제2항)
 - － 단,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우, 동법 제177조의2에 따라 최저납부세제가 적용되어 동법의 면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85%의 감면율만 적용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감면실적) 새마을금고 등의 지방세 감면실적은 2020년 146억원에서 2023년 18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 156억원으로 감소
 - 새마을금고 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실적은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 － 취득세 감면액은 2020, 2022, 2024년은 110억원 대였으며 2021년과 2023년은 140억원대로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용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0년 각각 36억원에서 2024년 45억원으로 증가
 - － 재산세 감면액은 2020년 36억원에서 2022년 4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 44억원으로 소폭 감소 이후 2024년 45억원으로 증가

[표 5]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46	181	163	184	156
- 취득세		111	141	118	140	111
- 재산세		36	40	45	44	45
- 취득세	신용협동조합 등 (안 제87조제1항)	34	47	39	41	34
	새마을금고 등 (안 제87조제2항)	77	94	79	99	77
- 재산세	신용협동조합 등 (안 제87조제1항)	14	15	17	16	17
	새마을금고 등 (안 제87조제2항)	22	25	28	27	28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방법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
 - (취득세)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은 최근 5년 (2020~2024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
 -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은 2020, 2022, 2024년은 110억원 대였으며 2021년과 2023년은 140억원대로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 (재산세)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은 최근 5년 (2020~2024년)의 연평균 증가율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
 - 감면조항별 2020~2024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액 증가율은 신용협동조합(안 제 87조제1항) 4.8%, 새마을금고(안 제87조제2항) 6.3%임

[표 6] 개정안에 따른 새마을금고 등 업무용 부동산의 지방세수 감소효과 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감면액 추정치	177	180	183	186	190
- 취득세	124	124	124	124	124
- 재산세 계	53	56	59	62	66
· 신용협동조합 등 (안 제87조제1항)	19	20	21	22	23
· 새마을금고 등 (안 제87조제2항)	33	36	38	40	43

(3) 추계결과

-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는 2027년 177억원에서 2031년 190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16억원(연평균 1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2027~2031년, 취득세 및 재산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87조)	-177	-180	-183	-186	-190	-916	-183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신미정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미정	02-6788-4837	mjshin@assembly.go.kr